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손해배상(기)
		선급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최철호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 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9,346,710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음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각종 항목의 금액 합계 459,764,295원[= 107,226,585원(조립 기준 기성금액 미지급금) + 143,489,390원(철근 자재대금) + 90,656,280원(가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 1,474,925원(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 5185,180원(다웰바 사용으로 인한 손해) + 20,719,820원(잡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 11,021,460원(PC Box 맨홀 및 면벽 설치 관련 추가 공사대금) + 14,641,000원(수해방지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 37,536,400원(현장관리비) + 27,813,255원(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시까지 원고가 타설 기준 공사대금으로 초과 수령한 250,417,594원(다음의 1.라.항 참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자 109,133,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²⁾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발주한 1, 3단계 공급부지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6. 8. 18. 원고와 사이에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들: 하도급인, 원고: 하수급인

○ 공사기간: 착공 2016. 8. 18. 준공 2018. 6. 17.

○ 공사대금: 1,232,000,000원

– 공급가액: 1,120,000,000원 (노무비: 360,273,467원)

– 부가가치세: 112,000,000원

○ 대금의 지급

– 선금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기성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0일 이내 현금 지급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가.항 기재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제9차 변론조서 참조

변경 차수	변경계약일	공사대금	변경 사유	비고
1차	2016. 12. 14.	3,682,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조물 공사의 증가	공사기간 변경 없음
2차	2017. 6. 20.	3,873,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설계변경 등	

다. 원고는 2017.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오고간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7. 8. 2. 피고들에게 '잔여공사 진행관련 실정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기성금 기준 공정율(71.4%)로서 주요공정인 교량 상부 슬라브콘크리트 타설 및 우수3련암거 13span, 폐종1련암거 4span 잔여 공정으로 남아 있다. 기성대비 약 113%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초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상태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안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바, 기 투입 적자금액 및 향후 추가 투입에 대한 원가 보전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② 피고 [redacted] 피고 [redacted] 한다)는 2017. 8. 4. 원고에게 '하도급(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수차례에 걸쳐 공정회의 및 공문 발송 등으로 작업 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정상적인 작업추진을 하지 않아 향후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원고의 귀책사유(시공 중단 및 지연 등)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보증금 청구 등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향후 공사진행을 위한 명확한 세부실천계획을 정리하

여 2017. 8. 11.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5. 피고들에게 '업무협조의 건(잔여공사 시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피고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인데, 피고들이 현장 관리 잘못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사진행을 독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다.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2018. 6. 17.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해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공사 미추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총 10회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2,867,317,594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여 교량 등 구조물을 조립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설한 시공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른바 '타설 기준'³⁾ 기성 공사대금(2,616,900,000원)과 비교할 경우에는 250,417,594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에 관하여

3) 이에 비하여 이른바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아직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설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조립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 공사대금을 말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2018. 6. 17.까지인데, 피고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예정공정표상 기한에 따라 위의 2018. 6. 17.보다 이른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만약 약정 준공기일에 앞서 완공하기를 원한다면 추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REDACTED]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었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들의 추가 협조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들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손해를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시공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조립 기
[REDACTED]
에 의하더라도 2,724,700,000원에 이르는바, 피고들은 2,616,9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측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금액은 조립 기준 기성금액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자재비 등의 추가 항목을 모두 계상한 금액이고, 반면 원고가 2017. 8. 25. 피고들에게 송부한 공문(을 제19호증)에 첨부된 문서나 원고
[REDACTED]

까지의 타설 기준 기성금액은 2,616,900,000원이며, 조립 기준 기성금액은 2,692,800,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기성금은 위의 차액인 75,9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이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도급인인 피고들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 중단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청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선금금 220,000,000원에 관하여 미정산분인 142,617,595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들이 스스로 공문에 첨부하였던 '기성내역'에는 이 사건 공사의 누계 기성금액으로 '2,724,700,000원'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성내역에 원고가 공사 중단 시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재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위에 기재된 2,724,700,000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 2,724,700,000원에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2,616,900,000원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⁴⁾

나. 철근 자재대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강제로 타절한 이후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보관 중인 철근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한 철근 자재 210.394톤(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반입한 철근 내역은 1,188.879톤이고, 그중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당시 확인된 기성량은 978.484톤이므로, 그 나머지 210.394톤은 피고들이 잔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에 해당하는 대금 143,489,390원(1톤당 단가 682,000원 적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철근 자재는 작업일보(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1,134.688톤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이후 사용한 철근 자재는 112.040톤에 불과하며(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한 철근 자재 중 일부는 가공과정에서 고재로 처리되었거나 도난·분실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액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단가를 적용하여 59,381,2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판단

을 제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7. 31.까지 반입되었던 철근 자재는 규격상으로는 H13㎜ 철근 752.540톤, H16㎜ 철근 123.552톤, H19㎜ 철근 60.480톤, H22㎜ 철근 16.042톤, H25㎜ 철근 19.361톤,

4) 원고와 피고들이 타설 기준 기성내역으로 확정하여 상호 정산을 마친 금액이 2,616,900,000원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으로 초과 지급된 250,417,594원은 본소청구 중 인정되는 전체 금액에서 향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H29mm 철근 55.240톤, H32mm 철근 107.473톤 등 합계 1,134.688톤으로서, 이는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분량인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하도급내역서'에 의하면 철근 자재의 재료비는 규격별로 상이한데 1톤당 486,149원 내지 530,000원(다만 고철 내지 고재대의 경우 1톤당 105,000원 내지 178,731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즈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자재 210.394톤을 남겨두었고, ② 피고들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남겨둔 철근 자재 210.394톤을 전량 사용하였으며, ③ 그 철근 자재의 대금이 1톤당 682,00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30,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⁵⁾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철근 자재 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인정하는 112.040톤에 해당하는 59,381,200원(= 112.040톤 × 1톤당 53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유로폼 거푸집 등을

5) 위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현장에 반입한 철근 자재들 가운데 기성량으로 인정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의 철근 자재들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시 가공 과정에서 전량 손실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원고가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분량의 철근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가공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철근 자재의 손실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남아 있었던 분량의 철근 자재들이 분실·도난되지 않은 채 피고들이 이를 전량 사용하였으며, 피고들이 사용한 철근 자재의 규격이 모두 1톤당 682,000원 상당의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현장에 남겨둔 가설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의 매입 대금 63,765,020원 및 [REDACTED] 유로폼 차임 26,891,260원(= 8월분 13,445,630원 + 10월분 13,445,630원) 합계 90,656,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이후 2017. 10.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REDACTED]

를 진행하였다.

(2) 판단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

[REDACTED]

업을 운영하는 [REDACTED] 유로폼, 써포트, 단관파이프 등의 가설 자재를 합계

[REDACTED]

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31. 및 2017. 10. 31. 2회에 걸쳐 차임 합계 26,891,260원(= 13,445,630원 × 2)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REDACTED]

[REDACTED] 사이에 '원고와 피고 [REDACTED] 2017. 9. 12. 계약 해지로 인한 수습방안으로 2017. 10. 24. 3개사 대리인의 가설 자재 공동조사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가설 자재

해결한다. 작업재개에 우선하여 [REDACTED] 요구조건 (임대손실부분) 적용 금액을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2017년 11월 및 12월 두 달에 걸쳐 피고 [REDACTED] 지급한다. [REDACTED]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

웠음을 약정하며, 반출된 가설 자재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면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으로 2017년 11월 및 12월에 각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1, 19, 20,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REDACTED] 매입하였거나 임차한 가설 자재를 피고들이 2017. 8.부터 전량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위 가설 자재 매입대금 및 차임(2017년 8월분과 10월분)에 상당하는 합계 90,656,280원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⁶⁾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들이 위의 가설 자재를 일부 기간 동안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사용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들의 변경시공 요청에 따라 당초의 설계

6)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매입하였던 가설 자재가 2017년 8월 이후에도 매입 당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량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가설 자재를 임의로 영득하였거나 소비·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거나, 원고가 임차한 가설 자재 역시 피고들이 2017년 8월 및 2017년 10월에 전량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내용을 변경하여 교량의 날개벽 문양거푸집을 설치하는 데 1,474,925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1,474,9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다웰바 및 잡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한 후 타절 당시 그대로 현장에 남겨둔 다웰바 481개(= 총 반입량 2,700개 - 기성량 2,219개⁷⁾)를 피고들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시가 상당액인 5185,180원(= 481개 × 10,78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는 2017. 7.경 합판 등 일부 잡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는데, 피고들이 타절 이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시가 상당액인 20,719,8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다웰바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으나 설령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가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내역서에 기재된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405,000원(= 481개 × 5,000원)에 불과하다.

② 피고들이 원고가 남겨둔 잡자재를 사용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잡자재 반입 내

무방해,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자재 관리도

7) 2020.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261개'는 '2,219개'의 오키로 보인다(원고의 2019. 8. 16.자 준비서면 참조)

되지 않아 도난당한 자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잡자재 등을 피고들이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① 갑 제12,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웰바를 1개당 10,7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현장에 총 2,700개를 반입한 사실, 원고가 반입한 다웰바 가운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시공되어 기성고에 반영된 다웰바는 2,219개에 달하며 나머지 481개는 현장에서 보관되다가 피고들이 잔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현장에 남겨둔 다웰바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시가에 해당하는 5,185,180원(= 481개 × 10,78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다웰바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내역서에 따라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둔 다웰바를 피고들이 임의로 잔여 공사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피고들이 20,719,820원 상당에 이르는 원고 소유의 잡자재를 잔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주장은 5,185,180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

고, 이를 초과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씨 박스(PC Box) 맨홀 및 면벽 설치 관련 추가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피씨 박스(PC Box) 맨홀 및 면벽을 설치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은 11,021,46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1,021,460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17, 35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인정하는 2,1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수해방지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들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 없었던 공정인 수해방지공사를 원고에게 요청하면서 추후 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14,6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수해방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해방지공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현장관리비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일은 2018. 6. 17.이고 원고가 위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정보다 이른 예정공정표(이는 피고 측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것으로서 일응의 예정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에 따른 공사 진행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②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한 공사 타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2017. 8.부터 2017. 11.까지 4개월 동안 이 사건 현장 관리를 위해 투입한 인원들의 인건비인 37,536,4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또한 부당한 타절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당초 예정된 이윤인 87,870,553원(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항에서 이하 같다)에서 이미 수령한 이윤인 60,057,298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13,25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을 2018. 6. 17.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일자는 피고들이 [REDACTED] 사이에 [REDACTED]

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던 예정공정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늦어도 2017. 10.까지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위 일자도 원고 측의 공사 지연에 따라 당초 약정한 일정인 2017. 4.에서 수차 연장된 것이다) 피고들의 전체 준공일자에 맞출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의 일정을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초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도 않은 채 공사 일정에 관하여 피고들과 협의하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속

① 을 제5, 6, 8,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점으로 '2017. 6.'에 이어 '2017. 9.' 혹은 '2017. 10.' 등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의 각 증거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준공기일인 2018. 6. 17.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이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2차에 걸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준공기일은 여전히 2018. 6. 17.로서 동일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적으로 합의된 준공기일은 위의 2018. 6. 17.이고 예정공정표 기재 일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8. 25. 피고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2018. 6. 17.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음에도 피

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책임을 돌릴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다만, 원고 역시 2017. 8. 2. 피고들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안 되니 적자금액 및 향후 추가 투입에 대한 원가 보전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

향후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사진행을 위한 명확한 세부실천계획을 정리하여 2017. 8. 11.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자, 2017. 8. 25.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피고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인데,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공사진행을 독촉하는 것이 안타깝다. 계약서에 명시된 2018. 6. 17.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결국 위 ②항 기재 예정공정표에 따른 일정대로 협조하는 것을 거절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다음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먼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7. 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이전인 2017. 11.까지 [REDACTED] [REDACTED] 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합계 25,593,000원(= 8,531,000원 ×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2017. 8.분 급여(8,531,000원)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피고 ■■■■■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2017. 8. 25.이므로 2017. 8.분 급여는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장관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25,593,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나아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실현하지 못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갑 제12, 2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윤' 항목으로 '79,882,321원'(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항에서 이하 같다)을 정하였는데, 누계기성에 따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이윤은 54,597,554원이고,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전체 기성내역(위에서 인정한 2,724,700,000원 상당의 기성내역)에 포함된 이윤은 56,806,63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해로 귀착된 이윤은 25,383,250원[= 23,075,682원(= 79,882,321원 - 56,806,639원) × 11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위 (가)의 ④항에서 살펴본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과정,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위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인정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②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로 원고에게 30,585,750원[= 50,976,250(= 25,593,000원 + 25,383,250원) × 6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 본소청구에 관한 소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도급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조립 기준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107,226,585원, 철근 자재대금 59,381,200원, 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474,925원, 다웰바 사용으로 인한 손해 5,185,180원, 피씨 박스(PC Box) 맨홀 및 면벽 설치 관련 추가 공사대금 2,123,000원, 현장관리비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30,585,750원 등 합계 205,976,640원에서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으로 초과 지급하였던 250,417,594원을 공제하면, 본소청구와 관련한 금액은 남지 않게 되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초과 지급한 250,417,594원에서 타설 기준 기성금에 반영되지 않은 원고의 작업분 141,284,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133,469원을 피고들 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으로 초과 지급하였던 250,417,594원에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합계 205,976,64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도급인으로서 불가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44,440,954원(= 250,417,594원 - 205,97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이 때까지는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인 2020. 10.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정본입니다.

2020.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주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